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심사보고서

1993. 12. 22.
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. 11. 13. 마포 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3. 11. 16
- 다. 상정일자 : 제20회 정기회 제5차 위원회('93. 12. 22.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생활체육과장 정수용)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증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이던 체육관련사회단체 등록업무 중 일부가 구청장에 위임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

나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한 별표 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”의 제2호 나목에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 종목에 대한 1건당 수수료 2,000원의 신설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건재)

동개정조례(안)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과 1993. 9. 25. 조례 제3027호로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, 구민 편의증진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(윤동현 위원) : 사회단체란 무엇을 말하나?
- 답변(정수용 생활체육과장) : 사회단체중 체육관련시설로 우리구는 1단체로 한국전통리듬체조 보급회가 있음.
- 질의(김유현 위원) : 수수료 2,000원의 근거는?
- 답변(정수용 생활체육과장) : 상위 조례의 개정으로 시장이 처리하던 업무를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 처리에 따

른 수수료로 인상된 것은 아님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38	제출일자 : 1993년 11월 13일
		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증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이던 체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업무 중 일부가 구청장에 위임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.

2. 개정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한 별표 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”의 제2호 나목에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 종목에 대한 1건당 수수료 2,000원의 신설

3. 개정근거

-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(1972. 12. 26. 법 제2392호) 제5조, 동법시행령(1975. 8. 14. 대통령령 제7723호) 제6조, 제11조, 제12조

- 지방자치법(1991. 12. 31. 법 제4464호) 제128호, 제130조

-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(1993. 9. 25. 조례 제3027호)

- 체육 61010-1053('93. 10. 22)호 “사회단체 등록업무에 따른 자치구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지시” 공문

4. 조례(안) : 별첨

- 5. 예산조치 필요성 : 불필요
- 첨부

1.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3. 개정근거 관련법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) 제2호의 제목중 “(19종)”을 “(20종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의 내용중 (10)급수공사 신청란 다음에 (11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종 목	단 위	수수료	비 고
(11) 사회단체변경 등록신청	1건	2,000원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증 개정조례

<별표>의 내무국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

개 정 조 레 안	관 련 법 규	수임자
12. 체육관계 사회 단체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변경등록(정관의 목적, 명칭변경은 제외한다) 나. 정기보고 접수	<input type="radio"/>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 <input type="radio"/> 동법 제6조	구청장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(별표)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19종)				(별표)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20종)			
종 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	종 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
가. “생략” 나. 신고, 신청에 관한 사항 (1)~(10) (생략) (11) (신설)				가. 현행과 같음 나. 신고, 신청에 관한 사항 (1)~(10) (현행과 같음) (11)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	1건	2,000원	

(다음 「페이지」에 계속)